

## ■ 연구실책임자 및 담당자 법적 직무사항 (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)

구분	법 조문	내용
연구실책임자	법 제2조 (정의)	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·관리·감독하는 자
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		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자
연구활동종사자		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원·대학생·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(교원 포함)
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역할	법 제9조	<p>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b>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</b>할 수 있다.</p> <p>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<b>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</b>하여야 한다.</p> <p>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<b>적합한 보호구를 비치</b>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.</p>
	관련규정	<p>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(고시 제2024-40호)</p> <p><b>제6조(일상점검)</b></p> <p><b>일상점검을 실시하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</b>는 위험요인 발견시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조치를 취해야 한다.</p> <p>연구실책임자는 <b>일상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</b>해야한다.</p> <p><b>제13조(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)</b></p> <p>연구실책임자는 해당 <b>연구실에 보관·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</b> 실시하여야 하고,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.</p> <p>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<b>연구실의 위험기계, 시설물,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</b>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14조(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)</b></p> <p>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 및 「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<b>유해인자별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</b>하여야 한다.</p>
연구활동종사자	법 제12조	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<b>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</b>
	법 제21조	<b>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</b> 을 받아야 한다.
	시행령 제16조	연구활동종사자는 <b>신규교육, 정기교육을 이수</b> 해야 한다.